

#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3차 공모 FAQ

2020.8.11(화)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 1.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공모 횟수가 변경되었나요?

☞ 올해는 연간 5회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경과 및 1~2차 공모 이후 잔여 예산 규모에 따라 공모일정 및 횟수가 4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3차 공모에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피해 경감 대책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4차 공모는 9~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2. 그렇다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전체 지원대상 사업기간도 변경되었나요?

☞ 총 5회 공모를 진행하며 2020년 12월까지의 공연에 대하여 지원함을 예정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업의 운영 방향과 공모 횟수가 변경됨에 따라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1월까지의 공연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1년 동안 진행된 공연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3. 이번 3차 공모의 지원대상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내 등록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 2019년 12월에 종료된 공연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공연일정이 종료되는 공연은 다음 공모회차에 포함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연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공연인 경우, 7월 31일까지의 공연장대관료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연일정이 2019.4.22~2020.8.21인 경우

→ 2019.12.1~2020.7.31(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공연장대관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

→ 8.1~8.21(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장대관료는 신청이 불가능

## 4. 금번 3차 공모의 주요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 1~2차 공모에 이어 3차 공모에서도 대관료 지원을 통한 창작발표 여건 마련과 함께,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작품의 피해경감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4차 공모는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을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관련 공지를 유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5.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이란 무엇인가요?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이 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1~3차 공모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유형을 새롭게 만들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원적격성 심사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4차 공모는 예술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5. 3차 공모에도 코로나19 지원유형은 포함되나요?

☞ 1~2차 공모에만 한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유형②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차 공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차 공모와 동일하게 기 계획된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합니다. 환불예정인 금액은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관료 지불내용/대관 변경사항/피해현황 등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6. 신청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이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차 공모에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내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자문을 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

- ① 기초공연예술이 아닌 경우 : 대중음악 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토크콘서트 등의 공연인 경우
- ② 미등록공연장 혹은 임대차공연장인 경우 : 공연을 진행한 공연장이 공연법상 공연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대관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경우
- ③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인 경우 :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경우  
\*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공연장 혹은 공연단체의 임직원과 공연장의 임직원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가족 간 거래, 단체 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원대상 제외 사항에 포함
-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과 중복사업인 경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직접 지원을 받은 동일사업인 경우  
\* 대관료 부분을 자부담으로 납부하였어도 이미 선정된 ‘사업(작품)’으로 보아 이중 선정 불가
- ⑤ 문예진흥기금 공통으로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경우 : 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예술가,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및 소속단체,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의 경우  
\* 특히 해당되는 단체(개인)과 공동기획을 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사항에 포함

## 7. 1~2차 공모에 선정된 공연도 운영기간이 다르다면 3차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운영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1~2차 공모에서는 단체별 1개의 공연작품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기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교부금이 3,000만원에 해당되는 공연은 이미 연간 최대 금액을 지원받았기에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외 3,000만원 미만 지원받은 공연작품은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3,000만원을 지원받은 작품이 1~2차와 서로 다른 공연장에서 진행된 작품인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1~2차 공모에서 '심도령의 하루' 공연을 '나주행복극장' 에서 2020.2.1~2020.4.31까지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3,000만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나주행복극장' 에서 2020.5.1~2020.7.31까지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지원신청불가
  - '서울기쁨극장' 에서 2020.5.1~2020.7.31까지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가능
- ② 1~2차 공모에서 '송춘향의 나날' 공연을 '부여별빛극장' 에서 2020.3.1~2020.3.17까지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2,500만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부여별빛극장' 에서 2020.6.1~2020.6.17까지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500만원까지 지원신청가능

## 8. 1~2차 지원금이 누적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 '작품' 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누적되며, '단체' 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금이 1~2차 공모와 별개로 누적 없이 진행됩니다.

- ① 1~2차 공모에서 '심도령의 하루' 공연에 대하여 3,000만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동일한 '심도령의 하루' 의 공연에 대하여 이미 3,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원신청불가
  - '송춘향의 나날' 의 공연에 대하여 단체에 대한 누적 금액 없이 3,000만원까지 지원신청가능
- ② 1~2차 공모에서 '마스크필수' 공연에 대하여 2,500만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동일한 '마스크필수' 의 공연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지원신청가능
  - '코로나19 조심' 의 공연에 대하여 단체에 대한 누적 금액 없이 2,500만원까지 지원신청가능

## 9. 1~2차 공모에서 미환불 된 대관료를 지원받았고, 이후 공연을 다시 진행하였다면 3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지원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적격성 심사 진행 시 1~2차 공모 이후에 다시 대관을 진행하시고,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0. 지원신청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2차 공모에 이어 3차 공모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적격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8월 중 예정)

※ 보다 자세한 안내와 빠른 교부를 위하여 지원신청단체(개인)별 안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공통사항〉

### 1.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민간예술단체(예술인)의 공연작품 발표에 있어, 공연장 대관료 비용이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시에, 대관료의 최대 90%까지 사후보전하는 형태로 창작 발표 부담 완화와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2. 지원적격성 심사는 무엇인가요?

☞ 지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신청자격〉

### 1.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하였습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진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대관 관련 대행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기획사 자체기획 공연인 경우(실제 대관금액을 기획사에 부담한 경우)에만, 기획사 명의로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모든 공연장의 대관공연이 지원신청 대상이 되나요?

☞ 국내 소재의 등록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공연장은 공연법 상 법적으로 등록된 공연장으로, 대관하신 해당공연장에 문의하셔서 등록공연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여부를 확인하시되, 올해부터는 ‘공연장 등록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에서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관공연장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등록공연장 현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공연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 3. 단체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단체도 지원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단체 지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의 사본을 제출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여러 개인이 함께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프로젝트팀 단위의 활동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단체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단체 명의로 지원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개인예술인들이 일시적으로 협업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하여 프로젝트팀 단위의 활동도 대관료를 실제 지불한 개인의 명의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5. 2019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나, 2019년 12월 대관료 사용분이 제한되어 지원받았습니다.

☞ 2019년도에도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으로 지원신청 대상기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오픈런 공연 등 특수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

1. 총 집행한 대관료의 90%까지 신청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90%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하며, 사업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습공간 사용료도 본 사업의 지원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정되더라도 최종 지원결정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부대시설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항목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대시설은 대관공연장에서 공연 시에 제공하는 시설, 장비 및 공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부장비 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연습공간 사용료도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관 공연장에 제공하는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사업 목적 및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선정 시에도,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의 다양한 경우를 일괄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지원신청하여 주시되, 해당 항목이 공통된 적용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 단체에서 복수의 공연작품 대관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2건 이상의 복수 공연을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신청서를 1개를 작성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한 번 지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 공연 신청일 경우에도 해당내용을 지원신청서 1개에 모두 담아 지원신청해 주십시오.

#### 4. 뮤지컬 분야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나요?

☞ 2019년도에는 창작뮤지컬 500석 이하 공연인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0년 1~2차 공모에 이어 3차 공모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하여 라이선스 뮤지컬을 포함하고 500석 이상의 대형공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성격의 공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대관료 집행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은 지원신청 시에 제출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선정단체에 한해, 대관료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신청 시에 대관료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한 절차이오니 꼭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 시에는 결격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빙서류 발급은 해당공연장에 문의하여 주시고,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문예진흥기금을 기존에 수혜받는 공연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예진흥기금 운영원칙에 따라 동일사업(작품)으로 수혜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7. 한국메세나협회의 예술지원매칭펀드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국메세나협회의 예술지원매칭펀드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체에서 해당 펀드기금을 수혜받는 경우에는, 펀드기금이 투입된 공연은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펀드기금이 투입되지 않는 공연은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8. 예술위원회 사업이 아닌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관료 항목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였으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대관료 항목 집행에 사용되었다면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전액보조 뿐만 아니라 일부 보조인 경우에도 지원신청 불가) 지원결정 이후에도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됩니다.

#### 9. 민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단체운영 목적으로 민간에서 지원되나, 대관료 집행 목적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지원받아 실제 대관료를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10. 공연장에서 대관료 항목을 할인받은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조금 형태로 수혜받은 내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공연장의 동문할인, 기간할인, 특별할인 등이나 공공지원을 받는 공연장의 할인된 대관료(서울형창작극장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단체에서 외국예술인을 초청하여 국내 공연하는 경우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문예진흥기금 공통사항으로 지원신청 부적격자가 됩니다.

단체의 기획공연에서 외국예술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결격사항이나 지원신청제한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공연의 목적 및 내용이 본 사업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 지원적격성 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신청서, 대관계약 증빙서류,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지원하는 단체의 단체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형②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내역을 지원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필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자료는 공통적으로 모두 제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공연을 진행완료하였으나, 대관계약 증빙서류(대관계약서 등)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관공연장의 계약서 작성 거부 등 사유)**

☞ 대관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관공연장의 작성거부 및 온라인대관 절차, 대체서류 작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허가서/대관승인공문/대관정산서 등의 관련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대관일정, 대관금액, 대관내역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4. 부대시설 사용내역도 증빙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공연진행에 따라 사용하신 부대시설 사용 내역도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대관계약서에 해당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사용내용(금액, 일정, 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 별도의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 운영방식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의 집행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 공연장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효력의 대체증빙이 가능합니다.

## 6.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은 무엇인가요?

- ☞ 선정 시, 실제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을, 단체는 단체 명의의 계좌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 통장계좌 사본도 제출가능)

## 〈지원신청서 작성〉

### 1. 지원신청서 내, ‘대관료 지출 총액’ 항목 작성이 어렵습니다.

- ☞ 대관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총 지출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원신청액은 각 지출액의 최대 90%까지 산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총 지원신청 금액을 합계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 (예시) A공연의 대관료 지출금액이 1천만원이고, 부대시설 사용료가 1백만원인 경우  
→ 대관료의 90% 9백만원, 부대시설 사용료의 90% 90만원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함.  
총 지원신청 금액은 990만원까지 신청가능

### 2. 지원신청서 붙임 ‘확인서, 서약서’ 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 ☞ ① 전자서명이나 전자도장이 있을 경우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 ② 서명이나 도장 이미지를 해당란에 붙여넣기하시면 됩니다.
- ③ 해당페이지를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에 스캔하여 한글문서 내에 붙여넣기하시면 됩니다.
- ④ 앞선 방법들의 사용이 어려우면, 해당 페이지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에 스캔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다른 파일들과 함께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업개요’ 탭에서 총소요액과 지원신청액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 ‘총소요액’은 신청공연에서 지출된 대관료 항목의 총 집행금액을 기입하여 주시고, ‘지원신청액’은 지원신청하는 대관료 금액(총 대관료의 최대 90%)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실제 공연종료일은 2019년 12월이나, 앞선 기간을 포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문화 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2019년 12월 1일 이전의 날짜 선택이 안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은 3차 공모에 제시된 지원대상 사업기간(2019.12.1 ~ 2020.7.31)을 기준으로 실 사업기간 작성란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공연일정이 종료된 공연은 금번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에 있어서는 2019년 12월 1일을 사업 시작일로 설정하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서 내에서는 실제 사업기간을 작성!)

3. 단체대표자명 NCAS 계정으로도 단체활동의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체활동은 단체아이디로, 개인활동은 개인아이디로 지원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활동의 경우, 단체대표자명 아이디가 아닌 단체아이디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4. 지원신청내역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출 이후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로그인 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선택 합니다. 나오는 화면에서 ‘진행절차-스텝 1.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원신청현황’에서 지원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을 완료하셨는데, 수정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지원신청마감일 이전까지는 기존 지원신청을 회수한 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지원신청현황’에서 해당 지원신청서를 클릭하면 기존 지원신청내용이 나옵니다. 팝업창의 회수버튼을 클릭한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 시스템 문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577-875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